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4. 7 선고 2019가단42083(본소), 2019가단5255686(반소) 판결
[공사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A

피고(반소원고) B 주식회사

변론 종결 2020. 3. 24.

판결 선고 2020. 4. 7.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
2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11,344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3. 4.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- 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 한다)에게 31,969,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반소: 주문 제2항과 같다.

이 유

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.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각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.

계약일	공사명	공사대금(원)	공사기간	완공일
2012-09-24	대구 남구 C에 있는 D교회 증축 공사 중 창호공사	74,800,000 (부가가치세포함)	2012. 9. 24.~ 2012. 11. 20.	2013년 2월경
2013년 2월경	성남 분당구 E 지상 상가주택신 축공사 중 창호공사	75,000,000 (부가가치세 별도)	2013. 2. ~ 2013. 7. 25.	2013년 5월경

다. 위 E 상가주택신축공사 중 창호공사(이하 'E 창호공사'라고 하고, 위 C에 있는 D교회 증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이하 'C 창호공사'라고 한다)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. 7. 25.자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, 여기에는 원고가 E 창호공사대금 7,500만 원 중 2013. 3. 18.부터 2013. 6. 27.까지 55,130,91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.

라.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. 2. 5.부터 2019. 2. 18.까지 합계 2,250만 원을 지급받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창호공사 공사대금 합계 1억 4,980만 원 중 2019. 2.18.까지 117,830,91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면서, 이 사건 본소 청구로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

31,969,090원의 지급을 구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C 창호공사대금으로 7,300만 원(피고는 지체상금 공제 주장을 철회하였다), E 창호공사대금(부가가치세 포함 82,396,000원)으로 9,554만 원을 각 지급하여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, 이 사건 반소 청구로 원고에게 초과지급 공사대금 11,344,000원의 지급을 구한다.

3. 판단

가. 아래 사실은 원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을 제1부터 5호증(각 가지번호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1) 피고는 C 창호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1 2012. 10. 30.부터 2013. 1. 3.까지 합계 7,300만 원을 송금하였다.

2) E 창호공사대금에는 노임 104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,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은 82,369,000원(= 공사대금 7,500만 원 - 노임 104만 원) × 110% + 노임 104만원}이 된다.

3) 정산합의서 기재 지급금액 55,130,910원 중 "2013. 3. 22. 지급금액 9,090,910원(부가가치세 별도, F)"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지급액은 1,000만 원이고, 위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면 2013. 3. 18.부터 2013. 6. 27.까지 피고의 지급금액은 5,604만원이 된다.

4) 정산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앞서 본 3 2016. 2. 5.부터 2019. 2. 18.까지 합계 2,250만 원을 지급한 외에 4 2013. 9. 4. 700만 원, 2013.9. 11. 700만 원, 2014. 10. 29. 300만 원, 합계 1,7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다.

나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각 창호공사대금은 합계157,169,000원(= 7,480만 원 + 82,369,000원)이고,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은 합계168,540,000원(= 위 1 7,300만 원 + 2 5,604만 원 + 3 2,250만 원 + 4 1,700만원)이 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1,371,000원을 초과지급한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.

다. 소결

1) 따라서 미지급 공사대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.

2)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지급 받은 공사대금 11,371,000원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,344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. 3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영아